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회)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 이유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사람이 25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를 희망하면 재보호조치가 가능하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제20218호, 2024. 2. 6 공포, 2024. 8. 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재보호조치의 절차 중 재보호조치 신청에 관한 사항을 부령에서 구체화하고, 자문성격의 위원회는 폐지하고 자문단으로 전환하는 등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사례 전문위원회”를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9959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보호조치 신청 절차(안 제12조의2)

재보호조치를 희망하는 사람은 재보호조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식을 추가로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나.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 명칭 변경(안 제14조의2 등)

“아동학대사례 전문위원회”를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으로, “위원”은 “전문위원”으로 변경함

다.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 구성 및 운영 규정(안 제14조의2제3항)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함

라. 타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안 제23조제1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82호, 2016.1.19.제정, 2016.9.1. 시행)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82호, 2016.1.19.제정, 2016.9.1. 시행)로 분리되어 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심사 전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재보호조치의 신청) 영 제22조의2에 따라 재보호조치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의5 서식의 재보호조치 신청서에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의 제목 “(사례전문위원회의 구성)”을 “(전문가자문단의 구성·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2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이하 “전문가자문단”이라 한다)은 2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례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을 “자문위원”으로, “사람이 된다”를 “사람으로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보건복지부 소속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경찰청 및 보장원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2. 법률, 의학, 아동복지 및 사회복지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아동보호,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지원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가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의3을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별지 서식 제10호의5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재보호조치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심의 후 2일
------	-----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아래 대리 신청인란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대리 신청인	성명	관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보호이력	시설명 또는 위탁부모 성명	보호조치의 종료 또는 퇴소 연월일
	주소(시설 또는 위탁가정 소재지)	

보호구분	☐ 아동양육시설 ☐ 공동생활가정 ☐ 아동일시보호시설 ☐ 아동보호치료시설
	☐ 가정위탁

재보호 사유	☐ 학교 재학·진학 준비 ☐ 직업 교육·훈련 ☐ 장애·질병 등 ☐ 지적 능력
	☐ 주거·생활·심리 등 자립에 어려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재보호조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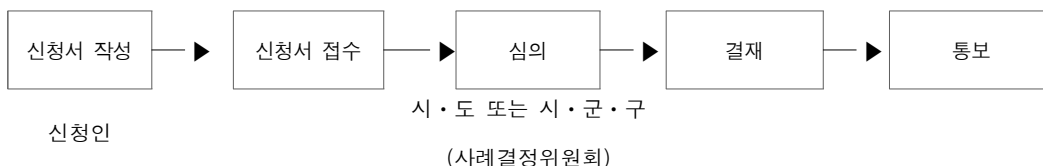
신청인(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대리 신청인의 범위	1.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2. 아동보호전담요원 등 관계 공무원 3. 그 밖에 재보호조치 신청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종사자, 위탁가정의 위탁부모	수수료 없음
첨부서류	1. 재보호조치 대상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사본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가정위탁 확인서, 위임장 등)	

처리절차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2조의2(재보호조치의 신청) 영</u> <u>제22조의2에 따라 재보호조치</u> <u>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0</u> <u>호의5 서식의 재보호조치 신청</u> <u>서에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u> <u>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 또는</u> <u>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u> <u>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신</u> <u>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u> <u>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첨</u> <u>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u>
<u>제14조의2(사례전문위원회의 구</u> <u>성) ① 법 제22조의5에 따른 아</u> <u>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이하</u> <u>“사례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u> <u>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u> <u>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u> <u>한다.</u> <u>② 사례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u> <u>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u>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u> <u>하는 사람이 된다.</u>	<u>제14조의2(전문가자문단의 구성·</u> <u>운영) ① 법 제22조의5에 따른</u> <u>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이</u> <u>하 “전문가자문단”이라 한다)은</u> <u>2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u> <u>한다.</u> <u>② 자문위원-----</u> <u>-----</u> <u>-----</u> <u>--- 사람으로 구성한다.</u>

1.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담당하는 보장원 소속 직원으로서 보장원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나.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분야의 전문의로서 아동건강 관련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아동복지학·사회복지학·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사법경찰관의 직에 7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 -----
-----보건복지부·경찰청 및 보장원 소속 직원으로서 각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법률, 의학, 아동복지 및 사회복지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아동보호,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지원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의 지원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
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
는 데에도 회피(回避)하지 않
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
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
히는 경우

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가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삭 제>

<삭 제>

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에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⑥ 위원은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삭 제>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전문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사례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례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삭 제>

제14조의3(사례전문위원회의 운영) ① 사례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례전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례전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삭 제>

② 사례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사례전문위원회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례전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사례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사례전문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례전문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례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례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 ①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

제23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 ① -----

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이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라 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재산의 평가조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5. ~ 7. (생략)

② ~ ⑤ (생략)

-----.

----- 등본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 별지 제6호서식-----
-----.

1. ~ 3. (현행과 같음)

4.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5. ~ 7.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아동학대대응과	
연 락 처	(044) 202 - 3443, 3444 (044) 202 - 3381, 3383